|  |  |  |
| --- | --- | --- |
| **2.3.9 『건물 태양에너지 광전기술응용 재정보조금 관리 잠정방법』 발부와 관련한 통지**  財建「2009」제129호  『재생에너지 법』과 에너지절약, 가스방출감소 관련 국무원의 전략적 포치를 관철하고 도농건설 분야에서의 태양에너지 광전기술응용을 가속화하기 위해 『건물 태양에너지 광전기술응용 재정보조금관리 잠정방법』을 제정하여 발급하니 이에 따라 집행하기 바란다.  재 정 부  2009년 3월 23일  별첨:  **건물 태양에너지 광전기술응용 재정보조금관리 잠정방법**  **제1조** 중앙재정은 국무원의 『에너지절약, 가스배출감소 종합성 작업방안 발부와 관련한 통지』(國發[2007] 제15호)와 『「건물 재생에너지응용 특별자금관리 잠정방법」발부와 관련한 재정부와 건설부의 통지』(財建[2007] 제460호) 내용에 따라 재생에너지 특별자금에서 일부자금을 배정하여 도농 건설 분야 태양에너지 광전기술응용 시범, 보급을 지원한다. 건물 태양에너지 광전기술응용 재정보조자금(이하 보조자금이라 함)에 대한 관리를 보강하고 자금의 사용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보조자금의 사용범위.  (1) 도시의 건물과 광전기술의 일원화응용, 농촌 및 오지 건물의 광전기술이용 등에 대한 정액보조  (2) 건물의 태양에너지 광전제품 설치기술표준규정의 제정  (3) 건물의 태양에너지 광전기술응용 통용 관건기술의 집적과 보급.  **제3조** 보조자금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는 하기 각호의 조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1) 단일공사 태양에너지 광전기술응용제품의 발전용량이 50KWp에 달하여야 한다.  (2) 태양에너지 광전기술응용제품 발전능률이 선진수준에 도달하고 그중 단결정 규소의 능률이 16%를 초과하고 다결정 규소 광전제품의 능률이 14%를 초과하며 비 결정규소 광전제품의 능률이 6%를 초과하여야 한다.  (3) 건물과 태양에너지 PV부재의 부재화, 일원화를 실현한 프로젝트를 우선 지원한다.  (4) 송전망에 접속한, 건물 태양에너지 광전기술응용 프로젝트를 우선 지원한다.  (5) 학교, 병원, 정부기관 등 공공건물 광전기술응용 프로젝트를 우선 지원한다.  **제4조** 지방들에서 광전기술 추진 지원정책을 출범하고 관철하는 것을 권장한다. 하기 각호 조건에 부합하는 지역의 프로젝트를 우선 지원한다.  (1) 송전망 접속전력의 전기가격 분담정책을 관철한 지역  (2) 재정보조 등 기타 경제장려정책을 실시한 지역  (3) 관련 기술의 표준, 규정 및 프로세스와 설계도 범례집을 제정한 지역.  **제5조** 이 통지 하달일 전에 완공한 프로젝트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6조** 2009년도의 보조기준은 원칙상 20위안/Wp로 정하고 구체기준은 건물과의 결합수준, 광전제품기술의 선진수준 등을 감안하여 분류별로 화정한다. 향후의 연도기준은 산업발전상황을 보아 적당히 조정한다.  **제7조** 보조자금 신청단위는 태양에너지 응용프로젝트를 시행하는 주체단위나 태양에너지 광전제품 생산기업이어야 하며 보조자금 신청단위는 하기 각호의 서류를 제공하여야 한다.  (1) 프로젝트 심사인가서류(사본)  (2) 건물 태양에너지 광전기술응용방안  (3) 태양에너지 광전제품생산기업인 경우에는 주체단위와 체결한 낙찰합의서  (4) 제공을 요하는 기타서류.  **제8조** 보조자금 신청단위의 신청서류는 속지원칙에 따라 당지 재정, 건설부서의 심사확인을 받고 성급 재정, 건설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성급 재정, 건설부서는 보조자금신청단위가 제출한 신청서류를 총괄 심사확인하고 매년 4월 30일과 8월 30일 전까지 공동으로 재정부, 주택도농건설부(별첨)에 보고한다.  **제10조** 재정부는 주택도농건설부와 회동하여 각지에서 보고한 자금신청서류를 심사, 평가하고 시범프로젝트와 보조자금 한도액을 확정한다.  **제11조** 재정부는 프로젝트 보조총액예산의 70%를 성급 재정부서에 조달한다. 성급 재정부서는 보조자금을 조달받은 후 건설부서와 회동하여 즉시 자금을 구체 프로젝트에 조달한다.  **제12조** 시범프로젝트를 완성한 후 재정부는 시범프로젝트 인수평가보고서에 근거하여 프로젝트의 예기효과를 달성한 경우에는 지방재정부서를 통하여 프로젝트의 나머지 보조자금을 프로젝트 집행단위에 조달한다.  **제13조** 보조자금의 지불관리는 재정 국고관리제도 관련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14조** 각급 재정부와 건설부서는 보조자금에 대한 관리를 착실하게 보강하여 보조자금을 유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보조자금을 허위날조로 사취하거나 차단억류하거나 유용하는 일이 일단 사출되면 국가 관련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15조** 이 방법은 재정부와 주택도농건설부가 해석한다.  **제16조** 이 방법은 하달일로부터 집행한다. |  | **关于印发《太阳能光电建筑应用财政补助资金管理暂行办法》的通知**  财建〔2009〕129号  为贯彻实施《可再生能源法》，落实国务院节能减排战略部署，加快太阳能光电技术在城乡建筑领域的应用，我们制定了《太阳能光电建筑应用财政补助资金管理暂行办法》。现予印发，请遵照执行。  财政部  二〇〇九年三月二十三日  附件：  **太阳能光电建筑应用财政补助资金管理**  **暂行办法**  **第一条**　根据国务院《关于印发节能减排综合性工作方案的通知》（国发〔2007〕15号）及《财政部建设部关于印发<可再生能源建筑应用专项资金管理暂行办法>的通知》（财建〔2006〕460号）精神，中央财政从可再生能源专项资金中安排部分资金，支持太阳能光电在城乡建筑领域应用的示范推广。为加强太阳能光电建筑应用财政补助资金（以下简称补助资金）的管理，提高资金使用效益，特制定本办法。  **第二条**　补助资金使用范围  （一）城市光电建筑一体化应用，农村及偏远地区建筑光电利用等给予定额补助。  （二）太阳能光电产品建筑安装技术标准规程的编制。  （三）太阳能光电建筑应用共性关键技术的集成与推广。  **第三条**　补助资金支持项目应满足以下条件：  （一）单项工程应用太阳能光电产品装机容量应不小于50kWp；  （二）应用的太阳能光电产品发电效率应达到先进水平，其中单晶硅光电产品效率应超过16%，多晶硅光电产品效率应超过14%，非晶硅光电产品效率应超过6%；  （三）优先支持太阳能光伏组件应与建筑物实现构件化、一体化项目；  （四）优先支持并网式太阳能光电建筑应用项目；  （五）优先支持学校、医院、政府机关等公共建筑应用光电项目。  **第四条**　鼓励地方出台与落实有关支持光电发展的扶持政策。满足以下条件的地区，其项目将优先获得支持。  （一）落实上网电价分摊政策；  （二）实施财政补贴等其他经济激励政策；  （三）制定出台相关技术标准、规程及工法、图集；  **第五条**　本通知发出之日前已完成的项目不予支持。  **第六条**　2009年补助标准原则上定为20元/Wp，具体标准将根据与建筑结合程度、光电产品技术先进程度等因素分类确定。以后年度补助标准将根据产业发展状况予以适当调整。  **第七条**　申请补助资金的单位应为太阳能光电应用项目业主单位或太阳能光电产品生产企业，申请补助资金单位应提供以下材料：  （一）项目立项审批文件（复印件）；  （二）太阳能光电建筑应用技术方案；  （三）太阳能光电产品生产企业与建筑项目等业主单位签署的中标协议；  （四）其他需要提供的材料。  **第八条**　申请补助资金单位的申请材料按照属地原则，经当地财政、建设部门审核后，报省级财政、建设部门。  **第九条**　省级财政、建设部门对申请补助资金单位的申请材料进行汇总和核查，并于每年的4月30日、8月30日前联合上报财政部、住房和城乡建设部（附表）。  **第十条**　财政部会同住房城乡建设部对各地上报的资金申请材料进行审查与评估，确定示范项目及补助资金的额度。  **第十一条**　财政部将项目补贴总额预算的70%下达到省级财政部门。省级财政部门在收到补助资金后，会同建设部门及时将资金落实到具体项目。  **第十二条**　示范项目完成后，财政部根据示范项目验收评估报告，达到预期效果的，通过地方财政部门将项目剩余补助资金拨付给项目承担单位。  **第十三条**　补助资金支付管理按照财政国库管理制度有关规定执行。  **第十四条**　各级财政、建设部门要切实加强补助资金的管理，确保补助资金专款专用。对弄虚作假、冒领、截留、挪用补助资金的，一经查实，按国家有关规定执行。  **第十五条**　本办法由财政部、住房城乡建设部负责解释。  **第十六条**　本办法自印发之日起执行。 |